

01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 개선안내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 및 제21조제1항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범위 및 감리원의 자격에 대한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 됨을 안내하오니 경력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 11. 10), 국무총리보고』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 추진함

■ 주요내용

- 기 경력신고 대상자
 - 기 경력신고만 하고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2007. 6. 25일 전까지 수첩발급 신청을 해야 함.
 - 기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수첩을 발급 받고 등급변경을 하지 아니한 자는 2007. 6. 25일 전까지 경력변경신고를 하고 등급변경신청을 해야 함.
 - 기술자격 및 학·경력자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법적지위를 인정하며, **2007년 6월 25일부터**는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함.(부칙 제4조)
- 2007. 6. 25일 이후 경력신고를 하려는 대상자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 중 특급은 전기분야 기술사만 인정하고,
 - 전기분야 기능장·기사·산업기사는 최고 고급까지 인정하며,
 - 전기분야 기능사는 중급까지만 인정함.
 - 전기관련 학·경력자에 대하여는 초급만 인정하고,
 - 순수경력자에 대하여는 협회에 시행하는 양성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해서 인정함
 - 경력신고를 하지 않은 자 중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상위 등급 또는 신규발급이 가능한 자는 2007. 6. 25일 전까지 경력신고를 하고 수첩을 발급 받아야 함

■ 개정법령 및 시행일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공포 : 2005. 12. 23(시행일 : 공포후6개월 후)
-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 : 2006. 6. 22(시행일 : 2006.6.24)
- 관련근거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 별표2 및 부칙 제4조
- 시행일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일은 2006. 6.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므로 **2007. 6. 25일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함.(부칙 제4조)
- 우편접수로 하는 경우 **2007년 6월 24일(일) 소인**까지 유효함.

■ 전력기술인의 범위 개정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등 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 기술사	
고급 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 기술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 기술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7에 따라 전력기술인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 감리원의 자격 개정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감리원	· 기술사	
고급 감리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중급 감리원	·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초급 감리원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력기술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로서 제7조의 7에 따라 감리원 양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

02

전력신기술 지정고시(제47호, 48호)안내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3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신기술명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배전선로 무정전 공법 (기술)

- 지정번호 : 제47호
-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평일 / (주)한백 / 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김봉주 / 윤 흡 / 한준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0960 / 200111-0023526 / 120-82-00052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5-10 /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단상 엘보접속재 활선개폐장치 (공압용)
 - 3상 동시 활선 엘보분리장치 (유압용)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 신기술명

CNCV케이블 지중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기술)

- 지정번호 : 제48호
- 신기술개발자
 - 회사명 : (주)신우디엔시 / 일렉컨설팅
 - 대표자 : 이기환 / 전명수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0725717 / 450226-1066910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3-9 신우빌딩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9-15 한빛빌라트
-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케이블 동심중성선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 · 고시일로부터 3년
- 신기술보호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등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2274-1662, 서울 중구 수표동 11-4)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03

전기기술지원 및
진단·점검 신청 안내

●● 우리 협회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한 산업자원부의 특별법인으로 우리 회원님들과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전력기술인들께서 겪고 계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도와드리기 위하여 전력기술지원센터에서는 전문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전력시설물에 발생하는 각종 트러블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안전점검 및 진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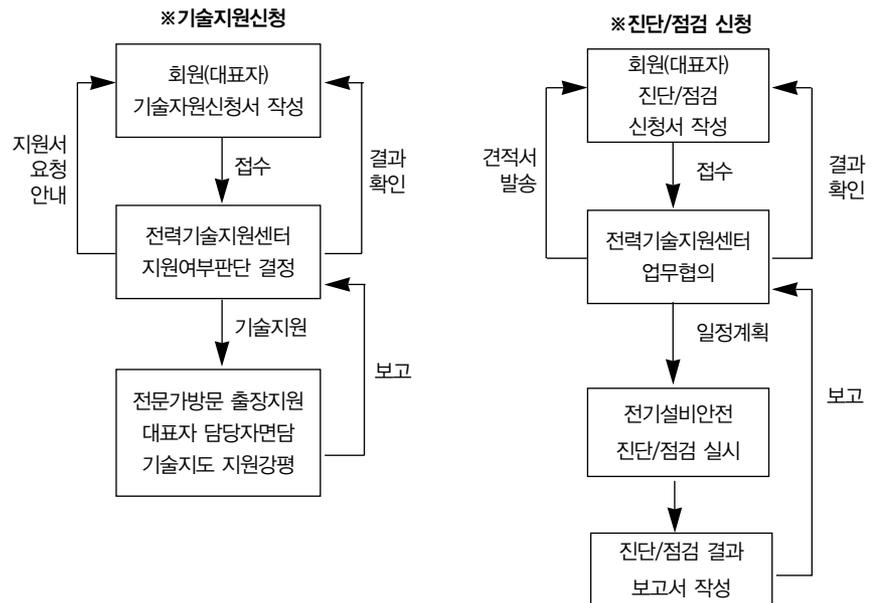
■ 전력기술지원센터 기술지원

- 회원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에서 직접 방문하여 기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단, 현장에서 바로 조치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합니다.)

■ 진단 및 점검

- 전력계통진단,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점검, 열화상 진단, 고조파 장애진단, 정전기 방지 기술진단, 기타 부적합 전력설비 부분진단

■ 신청 절차



04

전기안전관리 · 전기감리 · 설계전문 기술교육 일정 안내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특별)과정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서울	남서	3/20~22	협회 중앙회 교육장
	북동	4/24~26	
	북서	5/21~23	
	남동	6/19~21	
	남서	7/24~26	
	북동	9/4~6	
	북서	10/29~31	
	남동	11/26~28	
경기	6/26~28	군포문화 예술회관	
	11/20~22		
광주 · 전남	11/7~9	광주여성발전센터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대전	4/17~19	대전상공회의소
충북	12/4~12/6	청주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북	7/18~20	의정부 예술의전당
경남	5/29~31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전북	5/8~10	전주중소기업지원센터
대구	4/4~6	대구문화예술회관
	12/4~6	
부산	3/21~23	부산상공회의소
	11/20~22	
경기남	5/2~4	수원농민회관
	10/15~17	
계	22회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과정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서울	북서	3/13~15	협회 중앙회 교육장
	북동	4/18~20	삼성동 코엑스
	남동	5/7~9	협회 중앙회 교육장
	남서	6/12~14	
	북서	7/3~5	
	북동	8/21~23	
	남동	9/11~13	
	남서	10/16~18	
	북서	11/5~7	
	북동	12/20~12	
경기	3/27~29	군포문화 예술회관	
	10/23~25		
인천	6/13~15	인천건설기술교육원	
	11/20~22		
경기북	4/10~12	(주)KT 고양지점	
강원	5/15~17	강릉시 여성회관	
대전	10/16~18	대전상공회의소	
제주	5/15~17	제주시(미정)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경북서	11/13~15	구미대학
충남	5/2~4	천안공업대학 산학협력관
충북	8/28~30	청주중소기업지원센터
전북	8/28~30	전주중소기업지원센터
광주 · 전남	5/29~31	광주여성발전센터
	10/23~25	
대구	5/8~10	대구문화예술회관
	10/8~10	
경북동	9/19~21	포항대학
경기남	3/13~15	수원농민회관
	8/27~29	
부산	4/17~19	부산 상공회의소
	6/12~14	
	10/16~18	
울산	11/6~8	울산(미정)
	4/11~13	
경남	3/6~8	대학적십자사 경남지사
	10/9~11	
계	36회	

■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과정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서울	북동	3/6~8	협회 중앙회 교육장
	북서	4/3~5	
	남동	5/2~4	
	남서	5/29~5/31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서울	북동	6/26~28	협회 중앙회 교육장
	북서	7/10~12	
	남동	8/28~30	
	남서	9/18~20	
	북서	10/9~11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경기	5/21~23	군포문화 예술회관
	12/11~13	
인천	5/8~10	인천건설기술 교육원
	9/11~13	
	10/23~25	
광주·전남	9/11~13	광주여성발전센터
강원	10/9~11	원주중소기업지원센터
전북	3/13~15	전주중소기업 지원센터
	11/13~15	
울산	4/18~20	미정
대전	6/20~22	대전상공회의소
	9/4~6	
	11/7~9	
충남	3/7~9	천안공업대학 신학협력관
	10/24~26	
충남	3/28~30	청주중소기업 지원센터
	11/13~15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경기북	11/14~16	구리시(미정)
대구	3/20~22	대구문화예술회관
	11/7~9	
경북서	5/2~4	구미대학
경북동	4/24~26	포항1대학
부산	5/15~17	부산 상공회의소
	6/26~28	
	10/10~12	
	12/12~14	
경남	4/10~12	대학적십자사 경남지사
	12/4~6	
경기남	4/9~11	수원농민회관
	6/20~6/22	
	12/17~12/19	
계	43회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인당 교육비 : 76,000원(비합숙, 중식비 포함안됨)
- 교육신청 : 교육신청서[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하단의 전력기술 교육원에 있음]와 교육비 은행입금영수증 사본을 입금한 지회로 FAX 전송
- 교육비 납부 : 교육을 받고자하는 지역의 해당지회 은행계좌로 입금(은행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FAX번호 : 교육신청서 하단 참조)
- 접수방법 : 중앙회 및 해당지회 방문 접수, 중앙회 및 해당지회에 전화로 접수확인

※ 교육신청은 전국지회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 전기감리전문기술교육 (I)과정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강원	3/26~3/30	강릉시 여성회관
중앙회	3/12~3/16	협회 중앙회 교육장
	4/2~4/6	
	4/23~4/27	
	5/14~5/18	
	6/25~6/29	
	7/9~7/13	
	9/10~9/14	
	10/15~10/19	
	11/5~11/9	
	12/3~12/7	
	12/10~12/14	
계	12회	

■ 전기감리전문기술교육 (II)과정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부산	3/5~3/9	부산상공회의소
중앙회	3/26~3/30	협회 중앙회 교육장
	4/16~4/20	
	4/30~5/4	
	5/28~6/1	
	7/2~7/6	
	8/27~8/31	
	9/17~9/21	
	10/22~10/26	
	11/19~11/23	
	부산	
중앙회	12/10~12/14	협회 중앙회 교육장
계	12회	

■ 전기설계전문기술교육

지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중앙회	8/20~8/24	협회 중앙회 교육장
	9/10~9/14	
계	2회	

※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인당 교육비 : 210,000원(중식비 포함안됨)
- 교육 신청 : 노동부지정양식인 교육위탁계약서를[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메인창 하단의 전력기술교육원에 있음] 작성하시고 중앙회 지정 은행 계좌에 교육비 입금 후 입금증과 교육위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중앙회 교육훈련팀으로 FAX [02]581-4256] 송부 접수함

- 계좌번호 :
 - 우리은행 142-04-113066(한국전력기술인협회)
 - 교육신청 후 전화(02)2182-0781~5] 확인

※ 교육신청은 2월 15일부터 선착순 접수합니다

05

보증채무 약정갱신 안내

1. 보증채무약정갱신 안내

출자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3월, 출자회원사의 상당수가 보증채무약정이 완료됨으로 회원사께서는 보증채무약정서를 확인하시고 갱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매년 3월에는 보증채무약정의 신규·갱신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리 약정갱신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 한도거래용보증채무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보증서 발급이 불가 합니다.

2. 보증채무약정업무

약정기간내(3년기준)에 약정 한도금액내에서 수시 보증업무거래를 하고자 할 때, 1~2개 출자업체의 연대보증 한도거래용으로 표시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대보증인의 자격

구분	연대	보증인의 자격
이행보증	입찰, 계약, 차액, 하자	1개업체이상(출자좌수의 80%이상인 업체)
지급보증	선금급, 대출	2개업체이상(출자좌수의150%이상인 업체)

※ 연대보증한도 : 다른 업체에 연대보증을 서 줄 수 있는 한도는 보증업무의 경우 금액과 좌수에 상관없이 횡수로 5회까지만 서줄 수 있습니다.

4. 약정서 작성방법

- ① 약정인 : 법인(개인업체는 사업장)주소, 상호, 대표자를 기재하고 법인(개인업체는 개인)인감 날인
- ② 약정인의 대표자 개인자격 연대보증인 : 대표자 개인주소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고 개인인감 날인
- ③ 연대보증인
 - 법인업체 : 약정서 연대보증인란 및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양도증서 상에 법인주소기재 및 법인인감 날인
 - 개인업체 : 약정서 연대보증인란 및 출자증권담보제공증서, 양도증서 상에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및 개인인감 날인
- ④ 제출서류

구분	법인업체	개인업체
약정인	1. 약정서(협회사식) 1부 2. 법인 및 사용인감 제출서(협회사식) 2부 3. 사용인감제출서(협회사식) 4.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1부 6. 법인대표자 개인 인감 증명서 1부. 7.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 8. 양도증서.	1. 약정서(협회사식) 1부 2. 개인 및 사용 인감제출서(협회사식) 2부 3. 사용인감제출서(협회사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개인인감증명서 1부 6. 출자증권 담보제공증서 7. 양도증서연대보증인상
연대보증인	5, 7, 8 항	4, 5, 6, 7 항

5. 이행·지급보증업무 안내

◎ 보증업무

- 출자회원사의 전기설계·감리용역 수행에 따른 의무이행 및 지급보증 등에 필요한 보증

◎ 보증의 한도

구분	종류	이용 배수	비 고
이행보증	입찰보증	5배 이내	좌당 이용지분액은 전년도말 결산지분액을 적용함
	계약보증(차액보증포함)	15배 이내	
	하자이행보증	4배 이내	
지급보증	선금급지급보증	5배 이내	

- 거래별 이용한도액 산출 = 좌당이용지분액 × 출자좌수 × 해당배수

※ 경과조치 : 계약보증 이용배수는 2007. 1. 1 신규(약정갱신 업체 포함) 약정 체결업체부터 15배를 적용하고 기존업체는 종전 10배를 적용함.

◎ 보증수수료

보증종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하자이행보증	지급보증
수수료요율	1000원(건당)	0.35%	0.60%	0.40%	0.50%

- 기본수수료 1,000원

◎ 개인소액대출자자의 공제사업 탈퇴 신청 안내 ◎

'98년도 정기총회에서 직무회원의 의무출자제도를 임의출자로 전환토록 정관을 개정한바, 공제사업에 기 출자한 개인출자 회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으로 탈퇴신청을 받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자금을 환급 또는 회비로 대체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개인소액출자자로 남아계신 회원분들 중 공제사업을 탈퇴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탈퇴신청서를 중앙회 공제사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제사업 탈퇴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송금 요청자 : 공제사업 탈퇴 신청서 (날인) 1부, 주민등록증사본 1부, 출자예치금 영수증(협회발행분), 본인명의로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 1부.
 - 회비 대체 희망자 : 공제사업 탈퇴 신청서 (날인) 1부, 주민등록증사본 1부, 출자예치금 영수증(협회발행분)
- 신청서에는 반드시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영수증 분실자는 각서(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제사업 탈퇴 신청서 및 각서 양식은 공제사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

전력산업계 전문가 DB자료 갱신 · 보강관련 등록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2006년도 하반기 전력산업 기획조사사업 중 평가위원 자동선정 시스템개발에 관련 연구용역」을 산업자원부와 협약하여 2006년 12월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력기반조성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전담기관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에 기 등록된 전력산업계 전문가 Pool 자료의 갱신 · 보강과 등록되지 아니한 전력산업계의 전문가를 발굴 · 추가 등록하여 체계적인 Pool(DB)을 관리함으로써 전담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개발의 평가위원 및 기술자문위원 등의 위촉 위원으로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참여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협회에서도 기술자격 및 전문분야, 주요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 기술자문 · 교육강사 · 제도개선 분야의 위원 등으로 전기계 발전에 참여와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오니 아래와 같은 방법을 참조하시어 등록자료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자료 갱신 · 보강 요령

○ 인터넷상에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검색

www.etep.re.kr/ETEP/home/index.jsp

○ 홈페이지 우측 가운데 화면에서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스템” 창 클릭

○ 홈페이지 좌측 중간 화면에서

“ID 및 password” 입력 후 로그인

○ 홈페이지 좌측 중간의 로그인 화면 하단에서

“개인정보수정” 창 클릭

○ 기 입력된 개인정보 화면에서

변경된 인적정보(근무처, 연락처, 연구논문 등)를 수정

○ 개인정보 화면 최하단 중앙의 저장, 취소 선택 key에서

“저장” 창을 클릭하면 갱신 · 보강이 완료

리하여 직접 등록하고, 인터넷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뒷장의 등록자료조사표에 내용을 기재한 후 FAX[02]581-4257] 로도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사항

가.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 최초 메인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기관등록을 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미등록시 기관정보와 기관관리자 정보를 입력 후 등록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나. 기존 등록자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경우

- 추가시 : 추가건수를 우측 Key(1행, 추가)를 이용, 추가버튼 클릭 후 자료 입력
- 삭제시 :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이용한 선택 · 삭제는 불가능하므로 삭제건수를 우측 Key(1행, 삭제)를 이용, 마지막 자료부터 1건씩 삭제

다. 신규로 등록할 경우 : 최초 메인 페이지의 왼쪽 상단에 사용자등록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기본사항, 학력, 경력, 전문분야 등)하고 화면 하단의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기관등록은 “가”항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라.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하단의 “전력산업계 전문가 D/B 자료 갱신 및 보강” 창을 클

전력산업계 전문가 POOL(DB) 구축 등록자료조사표

▣ 기본사항 (기본사항은 필수입니다.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정보	입력선택	<input type="checkbox"/> 산업계 <input type="checkbox"/> 학계 <input type="checkbox"/> 연구계 <input type="checkbox"/> 협회·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해당분야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영문숫자포함 4~12자리미만, 아이디 중복시 별도연락 드립니다)			
	패스워드	(영문숫자포함 4~12자리미만)		패스워드 확인	
	성명	한글	영문	내국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주민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 경우)	-
E-mail					
소속장 (현재직장)	구분	<input type="checkbox"/> 출연기관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input type="checkbox"/> 벤처기업 <input type="checkbox"/> 국공립대학 <input type="checkbox"/> 사립대학 <input type="checkbox"/> 국공립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직장(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직위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우편번호	(기관명 「소속직장」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자택	전화번호	()	(지역번호까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F A X	()
	우편번호	(자택의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거래은행	은행명			지점	
	계좌번호	(전문가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수신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자택 (해당되는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력사항 (최종학력부터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연장기록이 가능합니다)					
1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교명			학과명	
	취득국가			학위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2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학교명			학과명	
	취득국가			학위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최종학위 논문제목					

▣ 자격사항	<input type="checkbox"/> 기술사 <input type="checkbox"/> 기사 <input type="checkbox"/> 산업기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소지하신 최상의 자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

▣ 경력사항 (최종경력부터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연장기록이 가능합니다)					
1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장(기관)명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2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장(기관)명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3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직장(기관)명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 공지사항 |

평가위원경력사항 (정부 기반기금 등 연구용역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했던 사업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연장기록이 가능합니다)

1	사업명		기관명	
	사업평가일	년 월 일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임시위원 <input type="checkbox"/> 위원 <input type="checkbox"/> 평가위원
2	사업명		기관명	
	사업평가일	년 월 일	참여구분	<input type="checkbox"/> 임시위원 <input type="checkbox"/> 위원 <input type="checkbox"/> 평가위원

지적재산권 사항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연장기록이 가능합니다)

구분	지적재산권 명칭	구분(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국내 / 국외	등록일	등록번호	발명자
1						
2						
3						

전문분야 (첨부된 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전문분야 1~3순위까지의 대/중/소분류 코드를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ex) 신에너지발전 : A/A1/A1010)

전문 1순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문 2순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문 3순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요연구 또는 논문발표 실적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연장기록이 가능합니다)

1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2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3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4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5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6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7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8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9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10	게재지		발행처		발표일	년 월 일
	연구(논문)명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상기자료는 전문가 본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술 분류 표

대 분류		중 분류		세 분류	
기호	연구분야	기호	기술분야	코드번호	세부기술개발분야
A	수·화력발전기술	A1	신전원 발전기술	A1010	신에너지발전
				A1020	재생에너지발전
				A1030	석탄의 신이용발전
				A1040	연료전지/MHD발전
				A1050	신연료발전
				A1990	기타 신전원 발전기술
		A2	발전설비 구축기술	A2010	입지환경기술플랜트
				A2020	플랜트 적용 평가기술
				A2030	플랜트 설계/제작기술
				A2040	플랜트 시공/관리기술
				A2990	기타 발전설비 구축기술
		A3	기존설비 운용기술	A3010	설비진단
				A3020	연소관리
				A3030	효율향상
				A3040	전기설비개선
				A3050	제어설비개선
				A3060	기계설비개선
				A3070	수·화학설비개선
		A3990	기타 기존설비 운용기술		
		A9	기 타	A9000	기타 수·화력발전기술
B	원자력발전기술	B1	신원전이용기술	B1010	신형 중수로
				B1020	신형 경수로
				B1030	신형 중수로핵연료
				B1040	신형 경수로핵연료
				B1990	기타 신원전 이용기술
		B2	발전설비구축기술	B2010	입지환경
				B2020	플랜트종합설계
				B2030	원자로계통설계
				B2040	노심 및 핵연료설계
				B2050	기자재 설계/제작
				B2060	설비시공/관리기술
				B2990	기타 발전설비 구축기술
		B3	기존원전운용기술	B3010	안전성 향상
				B3020	운전성 향상
				B3030	진단/검사/평가
				B3040	정비
				B3050	설비개선
				B3060	방사선관리 및 폐기물처리
				B3070	원전수명관리 및 폐로
				B3080	원전정보관리
				B3990	기타 원자력 운용기술
		B9	기 타	B9000	기타 원자력발전기술

대 분류		중 분류		세 분류			
기호	연구분야	기호	기술분야	코드번호	세부기술개발분야		
C	전기환경 친화기술	C1	발전환경 개선기술	C1010	지구환경		
				C1020	대기환경		
				C1030	수질환경		
				C1040	해양환경		
				C1050	감시 및 평가		
				C1060	폐기물처리		
				C1070	유해물처리		
				C1990	기타 발전환경기술		
		C2	전기환경 개선기술	C2010	코로나 및 이온류 장해저감		
				C2020	전자계 대책 및 저감기술		
				C2030	전자계 안정성 평가기술		
				C2990	기타 전기환경친화기술		
C9	기타	C9000	기타 전기환경기술				
D	전력계통 수송기술	D1	계통계획 및 운용기술	D1010	계통계획 및 연계기술		
				D1020	계통 안정화 제어		
				D1030	유연송전(FACTS)		
				D1040	광역보호계전 및 지능화 기술		
				D1050	전력시장 운용기술		
				D1060	모델링 및 해석 기술		
				D1070	경제적 전력수급 계획		
				D1990	기타 계통계획 및 운용기술		
		D2	송변전기술	D2010	가공송전		
				D2020	지중송전		
				D2040	직류송전기술		
				D2050	송변전기기개발		
				D2060	송변전기자재 소재개발		
				D2070	송변전설비 성능개선		
				D2080	고전압절연기술		
				D2990	기타 송변전기술		
		D3	배전기술	D3010	배전 신기술공법개발		
				D3020	계통신뢰도향상		
				D3030	설비 고장예지/수명예측		
				D3040	신소재 배전기자재 개발		
				D3050	전기재해 예방/환경관리기술		
				D3060	종합 배전자동화 및 보호협조		
				D3070	배전부하예측 및 설비투자계획		
				D3080	분산전원 및 배전계통 구성 기술		
				D3090	배전계통 뇌해대책 및 접지기술		
				D3990	기타 배전 기술		
		D9	기타	D4990	기타 전력수송기술		
		E	전기이용 기술	E1	전기품질 향상기술	E1010	전기품질 진단기술
						E1020	전기품질 개선장치
						E1030	전기품질 관리 네트워크
						E1040	배전설비 표준시공 기술
						E1990	기타 전기품질 향상기술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기호	연구분야	기호	기술분야	코드번호	세부기술개발분야
E	전기이용 기술	E2	수요관리기술	E2010	수요관리 평가기술
				E2020	축열·축냉시스템 운용기술
				E2030	고효율 축열·축냉기기 개발
				E2040	히트펌프 응용기술
				E2050	수용가 부하제어 및 관리기술
				E2990	기타 수요관리기술
		E3	전기저장 / 응용기술	E3010	전지전력저장
				E3020	초전도 플라이휠 에너지저장
				E3030	기계식 에너지저장
				E3040	초전도 재료개발
				E3050	방전·고전압기술
				E3060	레이저기술
				E3070	초전도 자석응용기술
				E3990	기타 전기저장/응용기술
		E4	수용가 시스템기술	E4010	전기안전기술
				E4020	요금제도관리기술
				E4030	전력시장/거래시스템개발
E4990	기타 수용가 시스템기술				
E5	전기사용 합리화 기술	E5010	고효율 전동기기개발		
		E5020	고효율전력변환장치개발		
		E5030	고효율 조명기기개발		
		E5040	고효율 중전기개발		
		E5990	기타 전기사용 합리화기술		
E9	기타	E9000	기타 전기이용기술		
F	전력설비 기초기술	F1	발전설비	F1010	금속/재료기술
				F1020	전기/제어기술
				F1030	기계기술
				F1990	기타 발전설비 기초기술
		F2	송변전설비	F2010	금속/재료기술
				F2020	전기/제어기술
				F2990	기타 송변전설비 기초기술
		F3	배전설비	F3010	금속/재료기술
				F3020	전기/기계기술
				F3990	기타 배전설비 기초기술
		F9	기타	F9000	기타 전력기초기술
		G	전력기술 인프라	G1	전력 기반조성
G1020	연구성과분석 및 평가기술				
G1030	국제협력기술				
G1040	전력기술표준화				
G1050	연구 및 시험설비구축				
G1990	기타 전력기반조성기술				
G2	전력 정보기술			G2010	D/B 구축·관리
				G2020	시스템개발 및 운용
				G2030	고객서비스정보기술
				G2990	기타 전력기술 정보화기술
G3	인력양성			G3010	기초인력양성
				G3020	산업인력양성
				G3030	전문인력양성
				G3040	장학지원
				G3990	기타 인력양성
G9	기타			G9000	기타 전력기반기술
Z	기타분야	Z1	기타 기술	Z1000	기타 전력산업연구개발기술